

데이터 기본법 기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기대하며



김 경 하 | 데이터특위 보호활용분과장(JN시큐리티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은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인터넷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소비하는 인터넷 경제, 정보 활동과 정보 산업에 중점을 둔 정보 경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데이터 경제 또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데이터가 생산·수집·유통·활용돼 혁신적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다양한 국가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왔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에 초석이 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고 본격 시행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 거래를 촉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안이 시행된다.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등 보호 측면의 우려일 것이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으로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에 공개·개방돼 있지 않은 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열람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구축한 금융, 통신,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안심구역에서는 원천데이터(로데이터)를 직접 제공해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유료 데이터도 안심구역에서 무상으로 분석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안심구역이 지정되면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도 데이터의 가치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게 평가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 알선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해 시장 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즉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데이터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 데이터 기본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현재는 데이터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돋는다거나 통계자료 등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돼 안전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데이터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전자신문_김경하 데이터특위 보호활용분과장(JN시큐리티 대표)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정부동향

고용노동부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일상회복 앞당긴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로 전국의 지역축제 행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일(화)부터 관계기관 협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행사·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락객이 크게 증가하는 봄철 시기와 맞물려 행사장 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및 감염병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5월부터 대면으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당 부스·공연장 주변 무대 소화기 비치 여부 ▶가스용기 방치 등 가스시설 관리 여부, ▶먹거리 장터 미규격 전선사용 등 화재 위험요인 관리 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 또한, 오랜만에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특히,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기 때문에 축제장 내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 낙후지역,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

-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内外로 선정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김 여 라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 팀장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편리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험과 혼란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사회를 누리고 잘 살기 위해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위원회)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문제 제기

우리는 삶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살고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고, 또 더 많이 실감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삶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원격 수업,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리함과 즐거움의一面에는 디지털 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혐오와 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은 디지털 위험과 안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활용을 잘하는 자와 못 하는 자, 비용이 필요한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격차와 권리 이슈에도 직면하고 있다.

2018년에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170,69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 하였는데, 1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2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만 3세~69세) 중 24.2%는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37%가 위험군에 속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19년 69.9%에서 75.4%로 향상 되었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0년 이후 감소한 정보불평등 수준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의 접근과 활용 및 역량 제고는 여전히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피해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사회의 효용과 권리를 다 같이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안전 및 권리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과 정책을 살펴보고,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였다.

○ 2.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과 정책

(1) 관련 법률 현황

현재 디지털 안전이나 권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다. 다만 온라인 기반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 [표 1]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 내용

법률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제42조의3)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제22조의 3)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제22조의5)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방송 편성(제69조제8~9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1조)
지능정보화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문화의 창달 ·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제44조~제56조)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제57조~제63조)

2020년 6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5)에는 정보격차, 정보통신 접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정보보호, 안전성 보호, 지능정보사회 윤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된다.

한편 2022년 1월 4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해 규정하는데, 디지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제21대 국회에는(2022년 5월 2일 기준) 「디지털 포용법안(의안번호 제2107422호)」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6369호)」 이 계류 중이다. 「디지털포용법안」은 디지털포용 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디지털역량 함양,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을 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피해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관련 정책 현황

디지털 안전과 권리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미디어 포용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이용자 피해구제,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통신재난 예방 · 대응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디지털 권리 및 포용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고 개별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 중복되는 과제도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 부처 간의 조율과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1)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법률 제정 검토

디지털 안전과 권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가칭)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디지털 안전’과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호해야 할 ‘디지털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이란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거래, 디지털 이용 등 디지털 사회 및 환경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말한다. ‘온라인 안전’, ‘인터넷 안전’, ‘사이버 안전’, ‘e-안전’ 등의 용어와 유사하지만 범위를 넓힌 개념이다. ‘디지털 보안(security)’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지털 안전(safety)’은 보안을 포함하여 디지털 콘텐츠, 분쟁 조정, 디지털 복지 등 디지털 행위와 권리에도 주목한다.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는 사회의 구성원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당연하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누리도록 부여받은 자격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디지털 권리는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 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포한다. 내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희생시키도록 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포함한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호주는 온라인 콘텐츠의 유해성에, 일본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안전과 권리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의 콘텐츠 규제나 디지털 전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라는 큰 그림에서의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표 2]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 현황

국가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콘텐츠와 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자해, 성인 콘텐츠, 학대 괴롭힘 등)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system)와 과정(process)을 갖추어야 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 대상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문제에 대응함 •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신고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및 삭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2021)」 등 2021년 5월 디지털 관련법 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본 방향은 모든 국민이 배제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것 •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보호 및 활용 • 디지털청을 설치하여 디지털 개혁 추진 	

자료: UK Parliament, 「Online Safety Bill」, (최종 검색일: 2022년 5월 2일), <<https://bills.parliament.uk/bills/313>>; eSafety Commissioner, 「Online Safety Act 2021, Fact sheet」, (최종검색일: 2022년 5월 2일).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1-07/Online%20Safety%20Act%20-%20Fact%20sheet.pdf>>; 김영은, 「일본의 디지털 사회 개혁을 위한 디지털청 설립과 시사점」, Hot Issue Repor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가칭)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지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에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념과 가치, 국가 · 사업자 · 이용자의 책임,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y) 강화, 추진 주체,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통합 정책 추진

디지털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이용자 모두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동시에 이용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회의 통합적인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의 목표와 비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디지털 혁신 · 디지털 피해 예방 및 구제,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평등 실현 등 관련 세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되, 부처간 · 중앙과 지역 간 ·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소통을 촉진시키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방재청, 감염병 등 질병에 대응하는 질병관리청, 원자력 안전에 집중하는 원자력안전 위원회처럼 디지털 사회의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대만의 행정원 소속 부회를 가로지르는 공공디지털 혁신스페이스(Public Digital Innovation Space: PDIS)

둘째, 디지털 안전과 권리는 단순히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고 또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효용성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사용법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배우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즉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책의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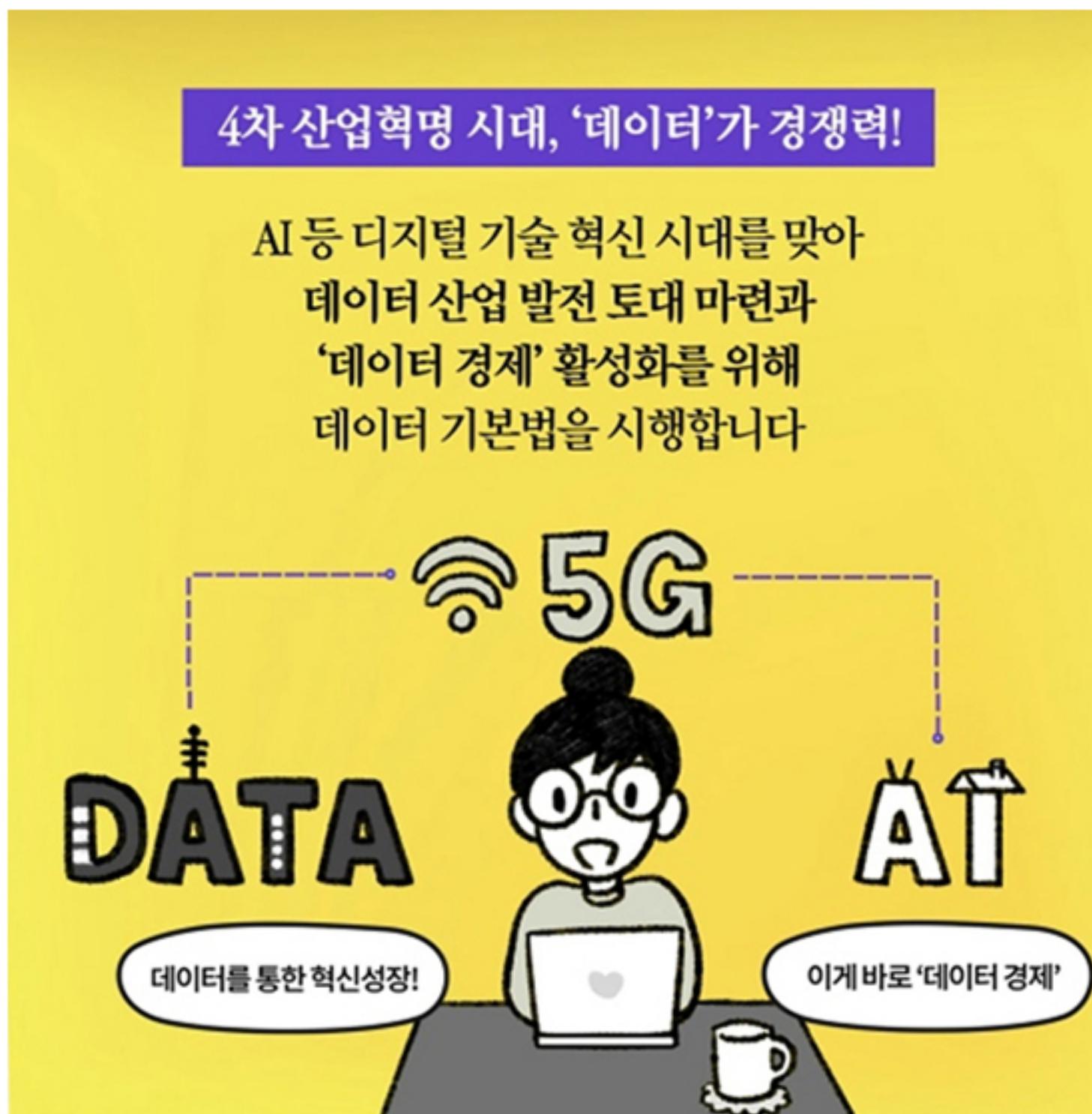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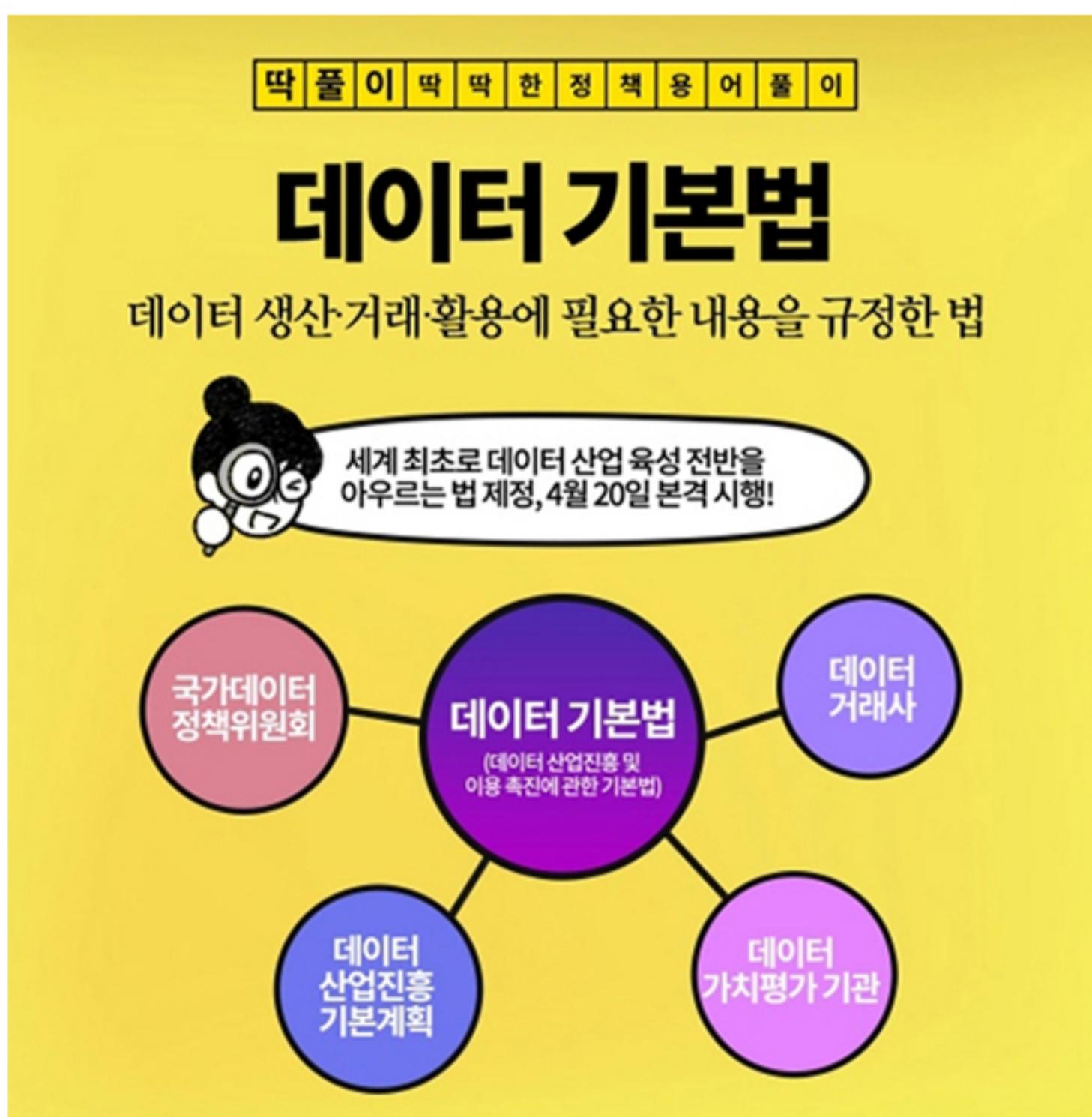
셋째, 디지털 이용자 피해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래 사기, 스미싱, 혐오 표현, 따돌림과 괴롭힘 등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skill)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양(culture), 디지털 시민성과 민주주의까지 디지털 사회의 성숙을 위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자신과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다. 최근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무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이용에 서툰 국민의 디지털 금융접근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기술의 이용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적응부터 디지털 범죄 등 폐해에 대한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 4.나가며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산업육성 및 디지털 인재 양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디지털 사회의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디지털 사회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돕고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다. 단순히 어떻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_김여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 팀장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모든 주기 지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립,
안전한 거래 위해 데이터 거래사 육성 등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 전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심의 확정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거래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거래 상담·증개·알선 등 수행 ◆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가치 기준 제공 및 평가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거래 및 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대상자 파악으로 체계적 지원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기회

경제체질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은 필수!

데이터 기본법이 산업현장에 안착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